

『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도입하여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교통환경 개선에 기여
-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용자 감소,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기업체에 한시적 부담금 감면 규정을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통유발부담금 면제(안 제3조)
- 나.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12조)
- 다.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제18조)
- 라.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 경감의 적용(안 제6조 및 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, 「자동차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」은,
 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△재난 발생으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%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△승용차요일제 시행 및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시 최대 90%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,
 - 본 조례가 시행되면,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총1,286개에 대하여 한시적 경감을 적용하게 되어 세입감소가 예상되기는 하나 코로나19감염병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·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됨. 또한,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 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을 전액 환수토록 명문화하여 도시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